

제복장구 규정

(제24차 개정 2020. 3. 6.)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규정 범위) ① 본 규정은 헌장 제18조에 의거하여 규정되었으며 이를 '제복장구 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에는 다음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제복 및 그 착용에 관한 사항
2. 휘장과 조직에 관한 표장 및 그 패용에 관한 사항
3. 각 부문별 진보과정에 대한 기장 및 그 패용에 관한 사항
4. 지도자 훈련자격에 대한 기장 및 그 패용에 관한 사항
5. 포상 규정에 의한 각 기장 및 연공장 기장과 그 패용에 관한 사항
6. 세계연맹에 관련되는 표장 및 그 패용에 관한 사항
7. 기치(□□)에 관한 사항

제2조(원칙) ① 본 규정에 관한 모든 제복과 장구는 헌장 제3조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제정한 본 연맹 운동의 상징으로서 본 연맹에 가맹한 대원 및 지도자 전원은 그 권위 유지와 단정한 착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본 연맹에 가맹한 대원 및 지도자가 착용하는 제복(해당 장구 부착)은 반드시 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의 제복 및 장구의 새로운 제정 또는 그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본 규정을 통하여 이에 필요한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수품 수급 업무) 중앙본부는 헌장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수품의 수급 업무에 관하여는 '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에서 관장토록 한다. (개정 01. 12. 29.)

제3조 2(수품의 분류) 수품은 기본수품, 특수수품, 자유수품 및 기타 수품으로 구분한다. (신설 86. 2. 21.)

1. 기본수품

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수품

나. 본 연맹이 간행하는 교범, 교본 및 기타 도서류

2. 특수수품

포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수품

3. 자유수품 및 기타 수품

본 연맹 활동에 필요한 전 각호 이외의 수품

제2장 제 복

제4조(제복의 종별) 본 연맹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원제복 : 동·하복으로 구분한다.

가. 정복

- (1) 비버스카우트 대원 정복(조끼) (개정 10. 2. 5.)
- (2) 컵스카우트대원 정복(하복 및 동복)
- (3) 스카우트대원 정복(하복 및 동복)
- (4) 벤처스카우트대원 정복(하복 및 동복)

나. (삭제 09. 2. 12.)

다. 활동복 (신설 94. 2. 25.)

- (1) (삭제 09. 2. 12.)
- (2) (삭제 09. 2. 12.)
- (3) (삭제 99. 12. 17.)
- (4) (삭제 09. 2. 12.)

2. 지도자 제복

가. 정복(하복 및 동복)

나. 예복(신설 89. 2. 28)

다. 활동복(개정 19. 12. 18.)

제5조(제복의 내용) 전조 제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원 및 지도자 정복

가. 모자(비버스카우트·컵스카우트는 캡,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및 지도자는 베레모) (개정 10. 2. 5.)

나. 향건과 조임

다. 반소매 셔츠(동복은 긴소매)

라. 긴바지(컵스카우트 하복은 반바지.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 지도자 하복은 긴바지 또는 반바지로 택일할 수 있다.) (개정 17. 2. 10.)

마. 요대와 버클

바. (삭제 09. 2. 12.)

사. 비버스카우트는 조끼 (개정 10. 2. 5.)

아.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 여자 대원 및 여성 지도자는 스커트를 정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신설 17. 2. 10.)

자. 제복 착용 혼용 기간 중, 컵스카우트는 하복 상의(반팔)와 동복하의(긴바지)를 정복으로 착용할 수 있다. (신설 19. 12. 18.)

2. 지도자 예복

가. (삭제 09. 2. 12.)

나. 정복 (개정 17. 2. 10.)

다. 넥타이 또는 스카프 (개정 17. 2. 10.)

라. 예복용 와펜이 부착 또는 인쇄된 검색 정장 상의 (개정 17. 2. 10.)

마. 요대와 버클

3. (삭제 09. 2. 12.)

4. 대원 및 지도자 활동복 (개정 09. 2. 12.)

가. 활동모

나. 정복상의 또는 티셔츠

다. 향건과 조임

라. 긴바지 또는 반바지(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여자대원 및 여성지도자는 치마를 병행하여 착용) (개정 13. 12. 19.)

마. 요대와 버클

바. 양말 (개정 09. 2. 12.)

제6조(제복의 양식 및 규격) ① 제복의 양식 및 규격은 연맹에서 정하는 ‘제복장구 매뉴얼(인시그니아)’에 의한다. (개정 13. 12. 19.)

② 전 항에 관련되는 도해 및 모든 장구의 부착위치도해는 연맹에서 정하는 ‘제복장구 매뉴얼(인시그니아)’에 의한다. (개정 13. 12. 19.)

제7조(제복 착용) 모든 대원 및 지도자는 스카우트로서의 활동, 행사, 훈련 및 집회 때에는 언제나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정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4. 2. 25.)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에 따라 정복 이외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대원 및 지도자는 특별활동과 행사 또는 집회시에 해당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09. 2. 12.)

2. (삭제 86. 2. 21.)

3. 대원 및 지도자는 필요시에 활동모를 착용할 수 있다. (개정 94. 2. 25.)

4. 우드배지 향건과 조임 및 비즈(Beads), 약장(정·부 훈련교수의 비즈, 약장 포함)은 자기 대의 대집회 이외는 언제나 착용할 수 있다. (개정 09. 2. 12.)

5. 스카우트 음악대 또는 고적대는 중앙본부의 승인(지방·특수연맹 경유)을 얻어 특수한 연주복(특별한 양식을 채택하거나 제복의 부분 장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연주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착용한다. (개정 09. 11. 13.)

6. (삭제 99. 12. 17.)

제8조(제복 착용 금지) 대원 및 지도자는 다음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수 없다.

1.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또는 계약 체결을 할 때와 모금을 할 때

(제복장구 규정)

다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스카우트 단체행사로서의 판매 행위 또는 모금행위는 무방하다.

2. 정치적 행사 또는 집회에 참가할 때

3. 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직접적 흥행 또는 출연을 할 때

제9조(제복 착용 기간)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7. 2. 10)

구 분	착 용 기 간	비고
하 복	5월 1일 ~ 9월 30일	기간 전후로 1개월 혼용가능
동 복	10월 1일 ~ 익년 4월30일	

제3장 장 구

제10조(기본장구) 본 연맹 기본장구의 종별, 양식, 규격 및 그 착용 위치에 관하여는 연맹에서 정하는 '제복장구 매뉴얼(인시그니아)'에 의한다. (개정 13. 12. 19.)

제11조(장구 패용과 순정) ① 본 규정에 규정한 모든 기본장구는 위 각 조의 제복과 더불어 본 연맹의 가맹원임과 또한 스카우트 가족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전 가맹원은 특히 그 양식, 규격 및 패용 위치의 정확을 기함은 물론, 단정한 패용과 그 순정을 유지함으로써 본 연맹운동의 기본이념과 이에 소속하는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엄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가 제정한 일체의 장구는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엄금할 뿐 아니라 비록 본 연맹의 가맹원이나 구성조직체라 할지라도 중앙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제조는 물론 그 유형 및 양식과 규격의 전부 또는 일부도 모조나 변조를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인쇄물이나 기타 목적에 이를 사용함을 금한다.

제12조(휘장의 순정) 본 연맹 가맹원, 각 단위대 또는 지구연합회의 스카우트 프로그램 활동이나 행사에 있어서 본 연맹의 상징인 '스카우트 휘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연맹에서 정하는 '스카우트 아이덴티티(SI)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그 각 부분의 양식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10. 2. 5.)

제13조(자유수품의 제조) ① 본 연맹 가맹원 또는 그 구성 조직체가 그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할 때에는 전 제3조 2(수품의 분류)에 규정된 기본수품 및 특수수품 이외의 수품으로 참가장, 기념배지, 패넌트, 리본, 각종 기념 장구류, 상장, 표지 및 기타 자유제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수품 중 장구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승인된 행사기간 중에 한하여 지정된 위치에 임시로 패용할 수 있으나 당해 행사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4조(진보기장) 대원의 각 부문별 진보에 관한 기장의 부착 및 패용은 다음에 의한다.

1. 컵스카우트 진급기장 (개정 09. 2. 12.)

가. 진급기장 종류 (개정 09. 2. 12.)

다람쥐대원기장, 토끼대원기장, 사슴대원기장, 곰대원기장 및 무지개대원기장의 5종으로 한다. (개정 09. 2. 12.)

나. 진급기장 부착 (개정 09. 2. 12.)

진급기장은 입대 또는 진급한 날로부터 해당 급위기장을 소정 위치에 순차적으로 누가 부착한다. (개정 13. 12. 19.)

다. 무지개대원기장

무지개대원으로 진급한 날로부터 제복 소정위치에 무지개기장을 달고 과정을 이수하며, 승진과정을 모두 이수한 대원은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진급기장의 초급스카우트 기장을 부착한다. (개정 15. 7. 2.)

2. 스카우트-벤처 진급기장(개정 04. 12. 16.)

초급스카우트 기장, 2급 스카우트 기장, 1급스카우트 기장, 별스카우트 기장, 무궁화스카우트 기장 및 범스카우트 기장의 6종으로 한다. (개정 09. 2. 12.)

가. 초급스카우트 기장은 입대한 날로부터 2급스카우트에 진급할 때까지 소정 위치에 부착한다. (개정 09. 2. 12.)

나. 2급, 1급, 별, 무궁화, 범 등 각급 스카우트 급위기장은 해당 급위가 승인된 날(진급된 날)로부터 각기 그 아래 급의 급위기장과 바꾸어 제복 소정 위치에 해당 급위 기간 중에만 부착한다. (개정 09. 2. 12.)

다. 범스카우트 메달기장은 제복 소정 위치에 상시 패용할 수 있다. (개정 09. 2. 12.)

3. (삭제 04. 12. 16.)

4. 취미장, 기능장, 도전장 및 어워드 (개정 89. 2. 28.)

각 기장의 종별, 양식 및 규격은 연맹에서 정하는 취미장, 기능장, 도전장 및 어워드는 '제복장구 매뉴얼(인시그니아)'에 의하여 부착한다. (개정 13. 12. 19.)

가. 컵스카우트 취미장기장 (개정 13. 12. 19.)

(1) 취미장기장은 컵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전 기간에 취득한 기장을 모두 어깨띠 전면에 누가 부착한다. (개정 13. 12. 19.)

(2) 5개 취득 시 마다 소정 위치에 화살촉 기장을 누가 부착한다. (개정 13. 12. 19.)

(3) (삭제 13. 12. 19.)

(제복장구 규정)

나. 스카우트의·벤처스카우트 기능장 기장(개정 04. 12. 16.)

- (1) 기능장은 어깨띠 전면에 3열로 부착하여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허리에 두른다. (개정 17. 2. 10.)
- (2) 어깨띠는 제복 복지와 같은 원단으로, 넓이 15cm로 하며, 어깨띠는 모든 합동행사, 대회 및 의식 때에만 두른다. (개정 86. 2. 21.)
- (3) 기능장기장은 대원 기간 중에만 패용한다. (개정 10. 2. 5.)

다. (삭제 04. 12. 16.)

제15조(연공장 기장) 대원 및 지도자의 연공장 기장의 패용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09. 2. 12.)

1. 대원의 연공장 기장 (개정 19. 12. 18.)

가. 연공장 기장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 12. 18.)

부문	비버스카우트	컵스카우트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개수	4종	6종	3종

나. 대원의 연공은 최초로 대원(비버스카우트, 컵스카우트, 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으로 선서를 하고 입대가 확정된 날로부터 가산하며, 대원으로 있는 전 기간 중에 인가된 연공의 수를 누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장을 패용한다. 이 경우에 각 부문별 경계의 단수기간도 누가의 대상이 된다. (개정 19. 12. 18.)

다. 대원의 연공장은 반드시 인가된 연공수의 기장만을 패용하며, 연공 누가수에 따른 연공장 기장은 해당 부분의 연공장 기장으로 한다. (개정 89. 2. 28.)

2. 지도자 연공장 기장 : 5개년 단위 및 10개년 단위의 기장(5, 10, 20, 30 등) 12종으로 한다. (개정 19. 12. 18.)

가. 지도자의 봉사 연공은 5년(실제 등록 봉사기간 12개월을 1개년으로 상정)마다 5개년 기장, 1개를 패용하며, 그 미만에 해당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나. 10년인 경우에는 10개년 기장 1개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개년 기장과 5개년 기장을 각각 1개씩 패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미만에 해당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패용하지 못하며 부착한 기장의 수가 2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대원의 연공 연수는 지도자의 연공연수에 누가지 못한다. (개정 09. 2. 12.)

제16조(지도자 자격기장) ① 지도자 자격기장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개정 20. 3. 6.)

1. 훈육지도자 자격기장(중급과정 수료자) (개정 09. 2. 12.)

2. 커미셔너 자격기장 (개정 86. 2. 21.)
3. 우드배지 자격기장(상급과정 제3부 수료자) (개정 09. 2. 12.)
4. 훈련부교수 자격기장
5. 훈련교수 자격기장
6. 종별 자격기장 (개정 17. 12. 14.)
 - 가. 노래와 게임
 - 나. 야영법
 - 다. 지도와 나침반
 - 라. 매듭법
 - 마. 응급처치
 - 바. 대원 진급과정과 기능장과정에 관련한 종별과정 (신설 20. 3. 6.)
 - 사. 대 활동에 필요한 종별과정 (신설 20. 3. 6.)

② 전 1~5항의 각 기장은 자격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취득한 최상의 자격기장 1 종만을 부착한다.

다만, 커미셔너 자격기장은 중복하여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3. 12. 19.)

③ 전 6항의 각 기장은 소정 위치에 취득 순으로 부착한다. (신설 13. 12. 19)

제16조 1(직별장) ① 헌장 제15조에 의한 지도자는 지도자 직별표장을 부착한다. (신설 09. 2. 12.)

제17조(전종지도자의 자격기장) 삭제 (09. 2. 12.)

제18조(유공장 및 각 기장) 포상규정에 의한 다음의 각 기장은 평상시에는 그 약 장만을 패용하고, 기장은 합동행사, 대회 및 의식 때에만 패용한다.

1. 우수대원 표창기장
2. 모범대원 표창기장
3. 전국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4. 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신설 89. 2. 28.)
5. 선행스카우트 표창기장
6. 인명구조 기장
7. 종교장 기장
8. 지도자 표창기장
9. 지도자 감사기장
10. 지도자 공로기장
11. 지도자 봉사대장
12. 지도자 봉사장
13. 전국명예대장 표창기장 (신설 99. 12. 17.)
14. 명예대장 표창기장 (신설 99. 12. 17.)

- 15. 모범대장 표창기장
- 16. 국제교류장 표창기장 (신설 09. 2. 12.)
- 17. 국제봉사장 표창기장 (신설 09. 2. 12.)

제19조(해외조직 및 해외파견단 표장) ① 해외에 조직되는 본 연맹의 지역연맹 및 지구연합회의 모든 가맹원은 국기 표장을 평상시에 부착한다. (개정 09. 2. 12.)

② 전 항의 해외조직 가맹원에 대한 규정의 제 장구 중 문자로 표시되는 장구는 필요에 따라 중앙본부의 승인을 얻어 그 문자를 한자 또는 영자로 표시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의 대원 또는 지도자로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 또는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파견되거나 특히 승인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연맹에서 지정한 항건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02. 2. 27.)

- 1. 삭제 (82. 3. 27.)

제19조 2(국기표장) 국기표장은 국기와 영자로 된 'KOREA'를 각인하여 제복 오른쪽 소매에 항상 부착한다. (개정 13. 12. 19.)

제20조(세계연맹 표지) 세계스카우팅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세계연맹이 그 사용을 권장하는 모든 표지는 다음에 의하여 이를 병용 사용할 수 있다.

- 1. 세계연맹표장은 국제적 행사 및 그 선전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를 도안 또는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세계연맹기는 본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 회의 및 훈련에서는 언제나 사용한다.
- 3. 세계연맹 배지는 지도자에 한하여 평복에 패용할 수 있다.

제21조(규정 외 제복장구의 사용)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어떠한 제복류 또는 장구류는 일체 금한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사용을 금한다.

- 1. 외국 스카우트의 제복 및 장구(유공장표창 또는 감사기장은 제외)의 사용
- 2. 본 연맹의 제복 및 장구에 외부단체 또는 기관의 제복이나 장수(국가공훈장은 제외)의 전부 또는 그 일부(훈련복, 교모 또는 표지 등)의 겸용

제4장 기치

제22조(기치와 종별) 본 연맹의 정규 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연맹기

2. 지방·특수연맹기 (개정 09. 11. 13.)
3. 지구연합회기
4. 단기
5. 대기
 - 가. 컵스카우트기
 - 나. 스카우트기
 - 다. 벤처스카우트기
 - 라. 삭제 (99. 12. 17.)
6. 중앙훈련원기
7. 세계연맹기
(세계연맹기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호에 의한다.)
8. 기타 (신설 99. 12. 17.)
(로버스카우트, 동우회, 동우대 등 스카우트 활동 조직)
※ 기 규격 및 양식과 색은 기존 로버스카우트기와 동일하게 적용

제23조(약기와 퍼레이드기) ① 전 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기치 이외에 다음과 같이 약기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1. 연맹기의 약기는 본 연맹의 명의로 파견하는 해외 파견단의 단기로 사용한다.
 2. 각 연합체기의 약기는 계양기로 사용한다.
 3. 기타 집회 및 행사에 사용한다.
- ② 본 연맹의 각 단위대(단) 및 연합체는 필요에 따라 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아 퍼레이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기치의 양식 및 규격) 본 연맹의 각 기치의 양식 및 규격은 깃봉을 포함하여 연맹에서 정하는 ‘스카우트 아이덴티티(SI) 매뉴얼’에 의한다. (개정 10. 2. 5.)

제25조(국기) 본 연맹의 모든 단위대(단) 및 연합체는 반드시 제22조의 기치와 동일규격의 국기를 구비하고 항상 본 연맹 해당 기치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7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2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4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5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복장구 규정)

7. 이 규정은 1985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89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1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이 규정은 2015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4.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